

#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

제 정 1996.10.19.  
개 정 1999.03.16.  
개 정 2003.01.27.  
개 정 2010.02.24.  
개 정 2012.09.06.  
 전면개정 2014.02.19.  
개 정 2016.05.25.  
개 정 2017.12.21.  
개 정 2019.06.24.  
개 정 2019.12.18.  
개 정 2022.06.21.  
개 정 2023.12.13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「도서관법」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<개정 2019.12.18.>

**제2조 (설치)**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5.25., 개정 2019.12.18.>

**제3조 (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
2.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
3.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<개정 2016.5.25.>
4. 독서진흥계획 수립
5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
6. 도서관 운영의 개선
7. 도서관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<신설 2023.12.13.>
8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사항 <개정 2023.12.13.>

② 자료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자료선정을 위하여 별도로 구성된 자료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본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. 단, 위원회에서 개선 및 요구한 사항은 자료심의 위원회에 회부한다. <신설 2019.12.18.>

**제4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12. 21.>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6.5.25.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(性)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,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.<개정 2019.6.24.>

1.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
2.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<개정 2017.12.21.>
3. 도서관 이용자
4. 지방의회 의원 <개정 2017.12.21.>

**제5조 (위원의 임기)**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21., 2019.6.24.>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 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6.5.25.>

**제7조 (위원의 의무)**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.

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④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서면심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<신설 2022.6.21.>

**제9조 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해당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.<개정 2016.5.25.>

**제10조 (수당 등)**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